

<문성요양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작성일자: 2025.01.01.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성요양복지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4조(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1. 관리책임자: 시설장 김상순
2.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이현지(시설장 김상순)
3.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이현지(시설장 김상순)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등)

① CCTV는 총 1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침실 5대, 조리실 1대, 사무실 1대
2. 공용공간 3대(거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3. 외부공간 2대(현관 1대, 빨래건조장 1대)

②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촬영시간, 촬영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2.1(210만화소,1920*1080)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촬영범위 : 거실,침실,조리실,물리치료실,사무실,현관,빨래건조장
4.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5. CCTV 저장 : 16채널디지털녹화기(210만화소지원,6TB)
6.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7. 영상정보 열람 장소 : 사무실

8. 영상정보 삭제 주기 : 저장 용량 초과 시 자동 삭제(3개월 미만)
-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 내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① 안내판 규격은 210mm×297mm로 정한다.
- ②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관문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7조(운영자의 금지행위)

- ①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8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및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열람요청 시 열람요청서, 비밀유지의무서약서, 의학적 소견서 등 책임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책임자는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④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①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문성요양복지센터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③ 책임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 ⑤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제13조(장비관리)

-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